

工業所有權 審判事例

(國)(內)(事)(件)

特 許 無 效

〈大法院 第1部 判決〉(1981. 7. 28)

- 裁判長：大法院判事 이 일 규
 關與法官： " 이 성 렬·전 상 석·이 회 창
1. 審判請求人(被上告人)：株式會社 金星社(서울, 中區 陽洞 282)
 2. 被審判請求人(上告人)：김덕술(경북, 대구시 동구 지저동 767)
 3. 原審決：特許廳 抗告審判所 1980. 5. 28字, 1978年 抗告審判(당) 第69號 審決
 4. 主 文：原審決을 破棄하여 事件을 特許廳 抗告審判所에 還送한다.

5. 理 由

上告理由를 본다.

特許法 第97條第2項에 의하면 같은 법 第97條第1項第1號, 第5號, 第69條第1項, 第2項, 第3項所定の 特許無效事由를 原因으로 하는 無效審判은 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에 抗하여 請求할 수 있고 利害關係人이라 함은 特許權者로부터 權利의 對抗을 받을 餘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現在業務上 損害를 받거나 받을 餘려가 있는 者를 包含한다고 할 것이다.

特許權者로부터 그 特許權의 實施權을 許與받은 者는 그 許與期間內에는 그 權利의 對抗을 받을 餘려가 없어 業務上 損害를 받거나 받을 餘려가 없으므로 그 期間中에는 그 特許에 關하여 無效確認을 求할 利害關係가 없다고 解釋되고 特許의 無效審判을 求할 이와 같은 利害關係의 有無는 職權調査事項이라고 하는 것 등은 當院의 一貫된 判例이다. (당원 1963. 2. 28 宣告, 62후 14判決; 1974. 3. 12 宣告, 73후 37判決; 1977. 3. 22 宣告, 76후 7判決;

1971. 4. 28 宣告, 70후 68判決參照)

그런데 原審決記載에 의하면 原審은 審判請求인과 被審判請求人雙方間에 締結된 基本契約書 및 필터의 購買示方書에 의하면 被審判請求人은 이 事件 特許에 의거하여 專用放電필터를 製造하여 審判請求人에게 供給使用케 한 것이고 當事者間에 本件 特許에 대한 實施權을 許與한 事實도 없으며 單純히 供給者와 使用者間의 購買契約書를 締結한 것이므로 이 事件 請求는 利害關係人에 의한 適法한 請求라고 判示하였는 바 記錄에 編綴되어 있는 이 事件 特許의 登錄謄本記載에 의하면 審判請求人은 이 事件이 原審에 繫屬中인 1973. 1. 23日 이 事件 特許의 專用實施權을 許諾받았음을 알 수 있다. 그렇다면 審判請求人은 위에서 說示한 利害關係인의 範疇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原審決은 審判請求의 適法與否에 關하여 審理를 下하지 아니하였다는 非違를 申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점 上告論旨는 그 理由가 沒다.

따라서 原審決을 破棄還送하기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.

— 參 考 —

抗告審判
 1978年 抗告審判(당) 第69號
 抗告審判請求人：김덕술
 被抗告審判請求人：株式會社 金星社
 위 當事者間의 1976年審判第328號(特許第4939號 無效審判)審決 不服抗告審判請求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.

主文：本件 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. 審判 및 抗告審判費用은 抗告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
 審 決

1976年 審判 第328號
 審判請求人：株式會社 金星社
 被審判請求人：안광준
 위 當事者間의 特許 第4, 939號 無效審判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.

主文：特許 第4, 939號는 이를 無效로 한다. 審判費用은 被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.